



구분	기관명	연락처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062-960-6956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062-611-1900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2-513-0977
	구례군장애인복지관	061-783-7605
	엠마우스복지관	062-524-770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061-393-6336
전북지사	남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063-653-1545
	동근마음	063-841-6446
	마음건강복지관	063-232-5558
	서로돕는마을	063-544-3380
	아름다운세상	063-244-2816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063-222-9999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063-243-6478, 6479
	희망의쉼터	063-442-4599
전남지사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061-433-8863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061-761-4438
	명도복지관	061-279-4879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061-285-2811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6462
	여수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070-4866-0434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061-332-4107
제주지사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064-751-8096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064-735-265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64-702-029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064-710-9863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모두가 지켜주세요!

- 장애인 훈련생(근로자)이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서로 이해해요
- 장애인 훈련생(근로자), 직무지도원, 사업주 서로 존중해요
- 장애인 훈련생(근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요
- 업무시간 준수 및 업무 중 취득한 개인·기업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요
- 장애인 훈련생(근로자)이 아닌 사업주 또는 다른 직장동료의 업무 지원 불가능해요
- 휴가 등 업무일정 조정이 생긴 경우 미리 장애인 훈련생(근로자)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는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지원고용사업 위탁기관과 이야기해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01.01.)

사업주, 장애인 훈련생, 직무지도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과 더불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2~5배) 될 수 있음을 유의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

전국대표번호 **1588-15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안내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지원

신청자격

- ▶ **훈련생**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사업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구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 충족



지원내역

구 분		지급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6월 이상 출석시)	1회 40,000원
	일비	1일 17,000원
	숙박비	1박 10,000원
사업주	훈련 보조금	1일 19,340원/1인
직무지도원	외부 위촉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사업체 등 근로자	1일 25,000원

현장훈련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생이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 기술 습득 및 직장 적응 훈련을 하여 취업으로 연계

▶ 지원절차



※ 현장훈련: 기본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

▶ 서비스 신청서류

- 지원고용 실시동의서(사업주)
- 지원고용 동의서(장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기타 신청자격 확인 및 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직장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직장 적응을 지원

▶ 지원절차



※ 적응지도: 6개월까지 지원(필요시 평가 후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 서비스 신청서류

-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실시동의서(사업주)
-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동의서(장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기타 신청자격 확인 및 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함께 지켜나가요!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직무 기술, 대인관계 능력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배치된 사람

직무지도원 선임요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1 재할·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4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
- 5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한 사람
- 6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 7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전국대표번호 1588-1519